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2000. 11.  
발 의 자 : 조 영 천 의원  
외 4인

### ◦ 주 문
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 : 11인
- 선임방법 :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

### ◦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
### ◦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50조
-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제7조제2항및제9조  
제2항

##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(안)

1. 목 적 : 서울특별시 마포구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세입·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.
2. 위 원 수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함.
3. 선임방법 :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함.